

『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인배 의원 외 9명

2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구미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례시설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(안 제4조)
 -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장례시설 추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에 지역 주민들의 기피시설인 장례시설을 추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